

2020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1호 안건

신 청 인	(주)인천글로벌시티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신규)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5-1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4. 24.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염해에 대한 피복두께 재확인하여 시공할 것. 2. 커플러 사용시 보, 기둥을 분리하여 표현할 것. 3. 관계전문기술자와 협업은 원설계자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추후 관련 사항(기둥 부동축소, 용접품질, 철근정착 등)을 고려하여 추진 4. 부주면 마찰력(하중)으로 인한 추가 장기 침하량 고려가 필요 5. 앵커의 인발시험의 개소를 도면에 명기 6. 202동 피난층 Y방향 횡력저항 벽체로의 SCAB를 검토할 것 7. CORE LINK BEAM의 강성을 유의하여 설계 추진. 끝.			

2020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2호 안건

신 청 인	디에스네트웍스(주)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신규)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98-1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4. 24.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벽체철근간격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 2. 원설계자의 구조감리를 통해 시공중 변경 또는 검토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 끝.			

2020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3호 안건

신 청 인	(주)에스코리아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신규)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4-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4. 24.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전이층 접합부 상세는 구조도면에 반드시 포함하여 시공 시 반영할 것. 끝.			

2020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4호 안건

신 청 인	(주)하나자산신탁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신규)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3-14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4. 24.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원설계자의 구조감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후 착공하시기 바람 2. 특수전단벽 배근위치와 배근높이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명확히 표시 바람 3. 구조물의 기초 지지력 검토와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 할 것. ※ 심의의견 3번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여부를 심의위원(송기일)에게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끝.			